

제4주차 제1강

# chapter 2 지식재산의 법적 의미

## chapter 2 지식재산의 법적 의미

## I. 서 설

- 지식재산권도 객체에 대한 **배타적·독점적 지배라는 성질** 소유권의 성질과 유사!
- 그 **객체**가 무형의 발명·고안·디자인·식별표지라는 점 소유권(동산과 부동산)과 **다름**!
- **객체가 무형이므로** 사실상의 점유가 불가능 여러 사람이 **동시에 이용가능** -> **권리침해가 용이** 또한 **침해행위 발견이 곤란**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는 「공공상 제약성」, 「권리객체 범위의 불명확성」, 「권리의 공유성」등의 특징 - 일반적인 재산권과 차이





# 田. 공공상 제약성1. 서 언

-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,
  언젠가 인류의 공용으로 돌아갈 공공성의 성질을 갖는다.
- 지식재산권의 **문화와 산업에 이바지**하는 기능.
  - -> 이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.
- 지식재산권에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고,
  반드시 그 권리를 공시하여야 하며,
  또 권리를 실시하거나 사용의무를 부담시키고
 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
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약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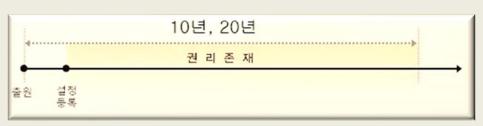
#### Ⅱ. 공공상 제약성

#### 2. 존속기간의 한정성

-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간 독점적·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,



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, 디자인은 2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단, 등록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.



- **저작권**은 「저작자가 **생존하는 기간**+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**70년간**」
- 존속기간이 **만료**되면, 권리로서의 성질을 잃는다.

#### **Ⅱ. 공공상 제약성**

#### 3. 필수적인 권리공시

- 지식재산권은 **그 권리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** 등록제도를 두어서 권리의 내용을 공시(公示).
  - -> 그 권리의 존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.
-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제도를 관장하고
  특허공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시.





## **Ⅱ. 공공상 제약성**

#### 4. 실시 내지 사용의무 부담

- 지식재산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권리+국가산업발전에도 이바지 권리자의 재량에 일정한 제한 : **실시의무 내지 사용강제**
- 부동산, 동산 등 재산에 대한 권리자는 권리행사가 자유 지식재산권자는 권리를 실시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 받는다.
- 지식재산권의 발생일부터 일정기간 내 그 권리의 실시·사용의무예) 특허발명의 경우 **3년간**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면, 제3자가 특허발명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신청가능.
  - ->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뜻과 달리 **강제로 자신의 권리가 실시되는 결과**.





#### **田. 공공상 제약성**

- 4. 실시 내지 사용의무 부담
  - **상표권**의 경우 지정상품의 영업폐지와 더불어 상표권이 소멸 상표권자가 **사망한 후 1년 내에** 상속인이 상표권에 대한 **상속신청 않으면 상표권 소멸 인정**.
  - 제한이유 권리자가 활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점권만 인정한다면,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반할뿐만 아니라,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지식재산권 본래 목적에도 반한다.

가장 오래된 상표(2017년 기준 63년된 상표)





#### **ш. 공공상 제약성**

## 5. 강한 신의칙의 요구

-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「권리의 실제적 실시」,「이용권 설정계약의 체결」, 「권리의 양도」,「권리침해의 구제」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
- 지식재산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도 여타의 다른 권리의 행사에서 보다 **더욱 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*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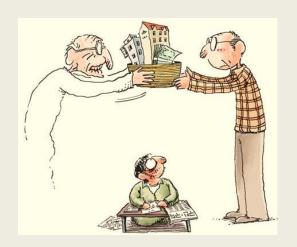




#### **田. 공공상 제약성**

## 6. 상속인 부존재의 특칙

- 권리자의 **사망**에 의해 그 **상속인에게 상속**
- **일반재산** 특히 부동산의 경우 **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** 그 재산은 **국고에 귀속**!
- 지식재산권은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권리 자체가 소멸
  - -> 당해 지식재산은 권리의 대상으로서 성격이 사라진다.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하고 권리 자체의 **독점적·배타적 성격도 소멸된다**.





## 皿. 권리의 보호대상의 불명확성

-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이 **무형의 재화라는 본래의 성질로** 인하여 **권리 객체의 범위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높다.** 
  - 그로 인한 **권리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**가 잠재되어 있다.
- 이를 방지하기 위해 「청구의 범위」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 권리객체의 기술적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다.







## Ⅲ. 권리의 보호대상의 불명확성

특허소송 전문성 부족 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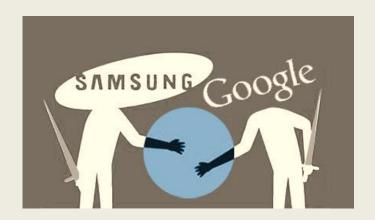


지식재산권도 하나의 권리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수 있다.공동연구자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



- 공동소유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시·사용 및 지분의 처분 등의 경우는 일반재산의 경우와 그 요건에서 차이





#### 1. 권리의 실시·사용시 특이성

- 산업재산권은 전면적인 실시·사용이 불가피 따라서 공유자는 특약 없는 **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가능**.
- 일반재산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있어야 사용가능(차이점)
- 다만 **저작권**은 다른 **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가능**.

#### 2. 지분의 처분시 특이성

- 공유자는 **지분양도, 질권설정의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**
- 또한 전용실시권 설정, 통상실시권 허락도 공유자 모두의 동의필요.
- 이는 일반재산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양도·질권설정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.

### 3. 심판 등에서의 공유자의 지위

- 공유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심판은 공유자 모두에게 **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**
- 따라서 공유인 지식재산권자에 대하여 **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** 공유자 **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** 한다.
- 또한 공유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
  공유자 모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.
-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관계





## 4. 손해배상청구소송

- 지식재산권법 분쟁에 관하여 지식재산권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.
- 지식재산권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법에 없다. 이 경우 **손해배상청구소송**은 민법상 권리·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**공유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청구해야 인정된다.**



4. 손해배상청구소송



2교시에서 봅시다.